

# 조선후기 獄案修啓의 실태와 『秋曹決獄錄』의 편찬

The Actual Conditions of 'Okansugye' and Compilation of  
*Chujogyeloklok* in the Late Joseon Dynasty

유 승 희 (Yoo, Seung-Hee)\*

## ◁ 목 차 ▷

- |                                |                                |
|--------------------------------|--------------------------------|
| 1. 서 론                         | 3. 「秋曹決獄錄」의 서술방식과<br>자료적 가치    |
| 2. 조선후기 刑律 강화와<br>獄案修啓제도의 정비   | 3.1 「秋曹決獄錄」의 서술방식 및<br>자료수록 실태 |
| 2.1 조선후기 법전 정비와 형률 강화          | 3.2 「秋曹決獄錄」의 자료 유형과 내용         |
| 2.2 獄案修啓제도의 정비와<br>「秋曹決獄錄」의 기록 | 4. 결 론<br><참고문헌>               |

## < 초 록 >

본 논문에서는 조선후기 법치가 강화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행정 운영 중 옥안수계제도의 정비와 이에 대한 결과물로서 『추조결옥록』이 편찬되는 과정 및 자료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국가는 옥안의 작성방식을 통일하여 문서의 체계를 일원화시켰으며, 녹색 옥안을 책자로 만드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이미 판결한 옥안을 책자로 만들어 기입하도록 형조와의 급부에 명령하였고, 형조의 낭관은 이를 연도별로 나누어 초록, 편집하였는데, 그 결과물이 『추조결옥록』이다. 『추조결옥록』에는 철종대와 고종대의 형사사건 기록이 주로 편집되어 있으며, 형조의 초기 및 계목, 각 사의 계목 및 수본, 심리 옥안, 격쟁 원정, 유배 및 살육죄인에 대한 계본, 전국의 방·미방수계성책, 왕의 진교 등이 기록되었다. 즉 『추조결옥록』은 한 사건에 대해 왕의 판부가 나오게 되는 모든 과정에서 수반된 중요한 문서의 요점을 함께 기록, 보완함으로써 형사결옥집의 총합체로서의 구실을 하였다. 이를 통해 당시 전통 형법이론에 관한 기초적인 검토 뿐 아니라 범죄행위의 구체적인 인과과정을 통해 국가의 사회통제와 범죄와의 관계, 국가의 감시와 민의 일탈 등에 대해 보다 심층적인 접근을 하는데 자료적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要語: 추조결옥록, 옥안, 옥안수계제도, 형조, 형사결옥집

\* 서울시립대학교 HK교수(jiin0330@hanmail.net)

접수일: 2010년 9월 1일 최종심사일: 2010년 9월 17일 심사완료일: 2010년 9월 25일

<ABSTRACT>

This study looked into the establishment of 'Okansugye' system for the operation of penal administration during the process of strengthening laws in the late Joseon Dynasty and compiling *Chuchogyeloklok*(秋曹決獄錄) as its outcome, and the characteristics of its data. The government standardized the system of writing official records of criminal cases, and compiled those official records cases into books. It ordered the Ministry of Justice and Euigumbu to make a book from the already decided official records of criminal cases, and Nanggwan(郎官) of the Ministry of Justice abstracted and reviewed them by year to compile *Chujogyeloklok*.

*Chujogyeloklok* included the edited criminal case records during the reign of King Cheoljong and King Gojong, and mainly recorded Gyemok(啓目) of the Ministry of Justice and government offices, records of criminal investigation, Gyeokjaeng wonjeong(擊錚原情), Gyebon(啓本) about exiles and murder cases, amnesty documents, and Jeongyo(傳教). In short, since *Chujogyeloklok* recorded and complemented the key points of important documents accompanied in all processes where the king's verdict regarding one case is passed, it served as the integrated system of criminal Gyeolokjib. This book can be valuable for more in-depth approach about relations between the nation's social control and crime as well as national observation and the public's deviation through basic review of traditional criminal theory and specific causes and effects of crimes.

Key words: Chujogyeloklok, Okan, Okansugye system, Ministry of Justice, Criminal Gyeolokjib

## 1. 서론

조선시대 대민 통치는 ‘덕으로 이끌고 예로 가지런하게 하며 법으로 이끌고 형벌로 가지런히 한다’<sup>1)</sup>는 공자의 말처럼 유교이념에 입각한 교화 위주의 예와 형벌을 주 기능으로 하는 법에 있었다. 이 시기 군주는 교화를 ‘정치의 근본’으로 생각하였으며, 형벌은 단지 ‘교화를 돕는 보조 도구’로 생각하였다. 그러므로 백성을 덕의와 예절로 인도하고 다스려 교화가 이루어진다면 형벌은 불필요한 것으로 생각했다.

이와 같은 형벌의 인식은 유교의 이상적인 통치관념에 불과했다. 교화를 통한 예치가 우선되었지만 사회가 발전하고 변화할수록 예치보다는 법치가 더 우선 시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교화와 법 어느 한쪽만으로는 통치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교화를 돕는 도구로서 형벌에 대한 인식은 심화되었다.<sup>2)</sup> 이러한 관념은 조선 후기 형조의 역할 강화와 함께 사회변화에 따른 새로운 법규조항의 신설을 요구하였으며, 각종 범죄행위에서부터 이에 대한 처벌, 정배죄인의 사면 등 범죄인의 현황 및 처리과정 등이 상세히 서술된 ‘刑獄類’의 편찬을 유도하였다. 「續大典」, 「大典通編」 등 법전 편찬과정에서 형전의 중요성이 강조되었고, 여러 형사정책과 함께 「審理錄」을 비롯한 「秋官志」, 「無冤錄諺解」 등 법례, 관례집이 편찬될 수 있었다.

특히 형옥류 편찬 작업은 형옥 자체가 죄수의 死活과 관련된 문제였기 때문에 이들을 충분히 살펴 옥사를 신중히 처리하려고 하는 국가의 의도가 내재된 것이었다. 조선시대 형조에서 발행된 형옥류로 현재 영인되어 번역된 것은 1781년(정조 5) 형조판서 김노진의 지시로 낭청 박일원이 형조의 소관 사례를 모아 편찬한 「추관지」와 1799년(정조 23) 홍인호 등에 의해 편찬된 「심리록」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추관지」에는 형조의 관제와 직무를 비롯하여 형사사건의 심리 옥안, 노비에 대한 처벌항목 및 형률이 서술되었으며, 「심리록」의 경우

1) 「英祖實錄」卷2, 英祖 卽位年 11月 6日 丙午.

2) 「審理錄」序文.

정조대 일반 형사범 가운데 국왕의 심리를 거쳐야 하는 사형수들에 대한 판결이 수록되었다.<sup>3)</sup>

본고에서는 형옥류 가운데 형조에서 발행되었지만, 자료적 특징이나 내용이 전혀 밝혀지지 않은 『秋曹決獄錄』(奎15148)에 주목하였다. 판례, 법례집으로서의 『심리록』, 『추관지』는 정조대 사형 죄수의 실태와 전반적인 형조의 분장업무를 파악하는 데에는 용이하였다. 하지만 시기적으로 정조대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19세기 이후의 전반적인 국가의 결옥실태나 죄수 관리 실태에 대해서는 자세히 파악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추조결옥록』은 서명에서 알 수 있듯이 형사 소송 사건의 결옥안을 기록한 것이라는 것을 쉽게 유추할 수 있다. 그러나 『추관지』나 『심리록』의 경우 책의 범례나 서문이 있어 저자의 편찬 의도나 서술 방식, 편찬 시기를 알 수 있는 데 반해, 『추조결옥록』은 방대한 분량의 형조의 결옥안을 담고 있으면서도 앞 권의 결락으로 편찬 시기나 서술 방식, 내용 등을 파악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추조결옥록』의 특징 및 자료적 가치에 대해서 검토하고자 한다. 먼저 조선후기 국가의 형률강화 조치와 함께 수반된 獄案修啓제도의 정비과정을 통해 『추조결옥록』이 편찬되는 정치적 배경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추조결옥록』의 구성, 서술방식, 수록된 결옥안의 내용 검토를 토대로 『추조결옥록』에 함의된 사료적 가치와 특징에 대해서 고찰하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은 조선후기 국가의 형옥류 기록 실태와 형사절차에서 나타난 국가 권력의 존재 양태 등을 살펴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3) 『추관지』와 『심리록』에 관한 서지학적 고찰로는 다음의 연구들을 주목할 수 있다. 연정열, “秋官志에 관한 일연구 - 노비징송을 중심으로 -,” 『노동경제논집』 10(1987). 권延雄, “『審理錄』의 기초적 검토-正祖代의 死罪判決,” 『이기백선생 고회기념 한국사학논총(하) 조선시대편, 근현대편』, 일조각(1994). 심재우, “18세기 후반 범죄의 통계적 분석-『審理錄』을 중심으로-,” 『法史學研究』 32(2005). 沈載祐, “<審理錄> 연구-正祖代 死刑犯罪 처벌과 社會統制의 변화,” 서울대 박사학위논문(2005).

## 2. 조선후기 刑律 강화와 獄案修啓제도의 정비

### 2.1 조선후기 법전 정비와 형률 강화

법치의 중요성은 조선후기 범죄의 증가와 함께 그 의미가 부각되어, 조선전기  
의 법전과 달리 刑典의 강화를 유도하는 원인이 되었다. 형전은 형률을 관장하던  
형조의 업무와 관련된 규정 가운데 시행을 통해 법령으로 채택된 것들을 모은  
것이다. 여기에는 재판의 판결기한, 죄수의 수감, 죄상을 심문하여 처단하는 기본  
원칙, 죄수의 구휼 등 刑政을 수행하는 원칙과 관리의 형벌납용, 위조, 절도, 捕盜,  
賊盜, 각종 禁制 등 백성들이 행할 수 없는 규제 법령이 수록되었다.

형률의 강화 양상은 17세기 후반의 수교를 모아둔 「受教輯錄」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수교집록」은 이전 115조, 호전 161조, 예전 130조, 병전 181조, 형전  
392조, 공전 7조 등 전문 986조로 구성되었는데, 다른 것에 비해 형전 조문의  
증가가 눈에 띄게 두드러졌다. 이러한 양상은 「新補受教輯錄」에 와서 더욱 증보  
되어 이전 204조, 호전 249조, 예전 144조, 병전 175조, 형전 612조, 공전 35조  
등 전문 1,419조로 확대되었다.<sup>4)</sup> 형전의 경우 「수교집록」에서는 392조였던 것이  
「신보수교집록」에는 612조로 약 2배가 증가되었음을 살펴볼 수 있다.

「신보수교집록」의 각 조문을 조선전기 「경국대전」과 비교해 보면, 「신보수교  
집록」에는 「경국대전」의 逃亡, 才白丁團聚, 捕盜, 元惡鄉吏,<sup>5)</sup> 銀錢代用, 罪犯准  
計, 告尊長, 停訟, 賤妾조가 삭제된 반면, 用刑, 省鞫, 屬公, 犯越, 殺獄, 奸犯,  
赦令, 贖良, 補充隊, 聽理, 雜令 등 11개 조가 신설되었다. 이후 「속대전」에 이르  
면 「신보수교집록」에 추가된 11개 조항 가운데 용형, 성국, 속공, 범월 등 4개

4) 홍순민, “조선후기 법전편찬의 추이와 정치운영의 변동,” 「한국문화」, 21(1998), 182. 「수교  
집록」에 수록된 수교는 주로 17세기 후반의 현종, 숙종 연간의 수교가 중심을 이루고 있는  
데, 수교 888조와 사목, 절목이 15개에 98조가 수록되어 총 986조가 수록되어 있다.

5) 포도와 원악향리의 조목은 영조대에 편찬된 「속대전」의 조항에서는 나타나고 있다. 포도조  
의 경우 「경국대전」에는 1개의 조항 밖에 없었던 것이 「속대전」에는 13개의 조항으로  
급증하고 있어 이 시기 도적 문제가 정부의 고심이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조가 삭제되는 한편, 포도, 원악향리조가 다시 추가되고 文記, 檢驗條가 신설되었다. 따라서 24편 71조의 『경국대전』 형법 조항은 『신보수교집록』에는 24편 612조로 약 10배 정도 크게 증가하였다가 『속대전』에 28편 263조, 『大典通編』에 33편 378조로 재정비되었다.

법전 정비과정에서 나타난 수정, 보완되거나 신설된 형률 조문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죄수를 체포, 구금할 수 있는 直囚衙門의 추가 제정과 범죄자의 수금문제가 보완되었다. 조선전기에는 병조, 형조, 한성부, 사헌부, 승정원, 장예원, 종부시를 직수아문으로 두었으며, 지방에서는 관찰사와 수령이 그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sup>6)</sup> 이후 『수교집록』에 이르면 비변사와 포도청이 직수아문으로 추가되었으며,<sup>7)</sup> 이는 『속대전』에 그대로 수록되었다. 범죄자의 수금 조항은 『경국대전』에 수금자의 기준 1조만 제시되었던 것이, 『속대전』에 이르면 관리의 수금문제와 수금인 기록 조항이 추가되어 5조로 증가되었다.<sup>8)</sup> 18세기에 이르러 죄수를 관리, 기록하는 錄囚 조항이 법전에 규정된 것은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둘째, 推斷條가 강화되었다. 추단조는 죄상을 심문하여 처단하는 것에 관한 기본원칙을 밝힌 것으로 『경국대전』에 비해 조문수가 급격히 증가하였다.<sup>9)</sup> 『경국대전』에는 형벌권 행사에 대한 주체와 함께 난언자, 익명서의 처리, 死罪의 覆審에 관한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이것이 『신보수교집록』에 이르러서는 범죄인의 심문, 처단 외에 궁궐월장이나 난입, 송사자의 담당관원 침학, 방화, 실화자에 대한 처벌, 궁속의 구타작나, 推奴나 債訟으로 인한 도민 침학, 세곡이나 군포의

6) 『經國大典』 卷5, 刑典 囚禁條.

7) 『受教輯錄』 卷5, 刑典 囚禁條.

8) 『續大典』 卷5, 刑典 囚禁條. 관리의 수금조항을 보면 정1품인 議政에 대한 우대조치로 이들은 惡逆을 제외하고는 拿問을 금지하였으며, 죄를 범한 朝官은 의금부에 수금하되 正科 出身과 東西班 正職 이외에 納粟, 軍功, 常賤, 出身 등은 移囚를 금지하였다. 囚禁인의 죄명은 모두 囚徒記에 기록하였는데, 만약 다른 죄명으로 억울하게 갇혔을 경우 수도기를 근거로 해당 관원은 파직되었다.

9) 추단조는 『경국대전』에 6조였던 것이 『속대전』에 이르면 52조로 8배가 증가되며, 『대전통편』에 이르면 다시 16조가 증보되어 74조가 수록되었다.

투절, 시체 훼손, 위조, 살육죄에 대한 처단 등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한 처벌의 원칙들이 제시되었다.<sup>10)</sup>

「속대전」과 「대전통편」에 이르면 「경국대전」과 달리 역적의 처리문제와 함께 陵上放火, 殿牌作變 등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관련된 조목이 증가하였다. 이와 함께 부모나 남편을 죽인 자, 노비로서 상전을 죽인 자, 官奴로서 官長을 죽이는 등 강상죄와 존속 살해, 고공의 가장 살해, 奴의 상전 간음 등 犯分과 관련된 조목이 강조되었다.

셋째, 위조를 비롯해 捕盜條와 贓盜條가 강화되었으며, 인명과 관련된 殺獄條와 살인사건의 검시에 관한 제반 사항을 기록한 檢驗條가 신설되었다. 「경국대전」에서는 印信과 저화 위조의 처벌 조항이 2조에 불과했던 것과 달리 「수교집록」에는 6조, 「신보수교집록」과 「대전통편」에는 9조로 증가하였다. 「경국대전」에 비해 호패를 위조한 자의 처벌과 사주전, 假銀 문제 등이 새롭게 추가되었는데, 특히 「신보수교집록」에서는 사주전 관련 조항이 약 50%를 차지하였다.<sup>11)</sup>

포도, 장도와 관련된 조항은 「경국대전」에 비해 10배 이상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절도가 백성의 생활 전반에 끼치는 영향이 많은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경국대전」 포도조에는 도둑을 잡았을 경우의 포상에만 중점을 두었다.<sup>12)</sup> 이러한 조항은 「신보수교집록」에 이르러 51조로 급격히 증가하였으며,<sup>13)</sup> 「속대전」에는 포도

10) 「新補受教輯錄」卷5, 刑典 推斷條.

11) 「新補受教輯錄」卷5, 刑典 僞造條. 「신보수교집록」의 사주전 조항을 보면, 동전을 몰래 주조한 자는 匠人, 奉足を 논하지 않고 斬刑에 처한 것과 함께 동전을 주조하도록 장소를 제공한 자, 主接者와 이익 분배를 도모한 자도 모두 참형으로 논죄하였다. 이들 사주전의 조항은 그대로 「속대전」에 기록되었다. 사주전 관련 조항의 등장은 조선 후기 상업발달로 인한 동전유통이 정착되면서 화폐경제가 발전하자 이에 기인하여 동전의 위조가 민간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을 방증해 주는 것이다. 「대전통편」에는 宮差로서 圖署를 盜用하고 關牒을 僞造한 者에 대한 처벌이 추가되었다(「大典通編」卷5, 刑典 僞造條).

12) 조선 초기에 포도는 포도관을 따로 세우지 않고 오가통제를 통해 형조, 한성부, 의금부 등이 다른 죄형과 함께 일괄적으로 다루었기 때문에 대체로 포도대책이 포상위주로 나타나고 있다. 강도에 대한 포상규정은 1439년(세종 21), 절도에 관한 것은 1445년(세종 27)에 각각 골격이 잡혀졌으며, 1466년(세조 12)에 나타난 포상규정이 「경국대전」에 수록되고 있다(「世祖實錄」卷39, 世祖 12年 9月 丙戌).

13) 「신보수교집록」장도조에는 도적의 처벌문제와 관련된 조항이 15건, 명화적이 9건, 도적의

와 장도조로 구분하여 수록되었다. 우선 도적의 처벌 조항이 강화되었는데, 도적의 장물, 통교문제, 도적 고발 규정이 보완되었다. 명화적 관련 조항도 증가하였다. 조선후기 명화적이 많이 발생하자 무리를 지어 남의 재물을 겁탈한 자는 모두 명화적으로 논하였으며, 죄상을 승복한 자는 사형에 처하였다. 인가에서 명화적질을 한 자는 재물을 얻지 못했거나 사람을 죽이지 않았더라도 주범과 종범에 상관없이 모두 참형에 처하였다.<sup>14)</sup>

한편, 『경국대전』에 나타나지 않았던 살옥 관련 조항과 검험조가 신설되는 양상을 살펴볼 수 있다. 『수교집록』 살옥조에서는 고공이 가장을 죽인 경우, 처의 상전을 죽인 경우, 투기로 인해婢를 죽인 婦女의 경우, 지아비를 죽인 경우의 처벌이 명시되어 있다.<sup>15)</sup> 이후 『신보수교집록』과 『속대전』에는 존속살해와 함께 원한으로 인한 살인, 誤殺, 실성한 자의 살인에 대한 규정,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 자식이 타인을 살해한 경우, 자기의 처와 간통한 자에 대한 살인, 형제·친족 간 살인 등에 대한 처벌이 명시되었다.<sup>16)</sup>

아울러 살인사건의 정확한 파악을 위해 살해당한 시신의 조사, 증인들의 증언 등 살인 사건의 처리과정을 기록한 검험조항이 새로 추가되었다. 검험은 사망원인의 정확한 파악을 위한 중요한 형사 절차 가운데 하나였다. 따라서 법전에는 검시관의 규정과 함께 사망원인인 實因에 의문점이 있으면 정확한 파악을 위해 3, 4검을 실시한다는 규정이 제시되어 冤獄이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하였다.<sup>17)</sup>

이처럼 조선후기 국가의 형률 강화 정책은 국가의 범죄인 관리와 대민 통제의 강화 두 측면에서 진행되었다. 고신하는 신장의 크기나 시행시기, 관리들의 죄범

---

장물과 통교문제가 각 2건, 捕盜문제가 4건, 도적고발이 1건, 옥문과쇄가 1건, 강도가 1건, 궁궐과 관아물의 투철이 10건, 쌀의 偷取문제가 4건이 규정되어 있다.

14) 『新補受教輯錄』 卷5, 刑典 贓盜條. 이와 함께 명화적을 잡은 자나 고발한 자에 대한 포상을 마련하였다. 명화적을 3명 이상 잡은 경우 출신과 양인을 논하지 말고 모두 자금을 더해 주었으며 공, 사천은 면천하였다. 또한 도적 가운데 자신의 무리를 고발한 자는 죄를 면해주고 은 50냥을 지급하였으며 7, 8구 이상이면 자금을 더해주고 은 110냥을 지급하였다.

15) 『受教輯錄』 卷5, 刑典 殺獄條.

16) 『新補受教輯錄』 卷5, 刑典 殺獄條; 『續大典』 卷5, 刑典 殺獄條.

17) 『續大典』 卷5, 刑典 檢驗條.

문제 등을 언급한 「경국대전」과 달리 조선후기 정비된 법전의 형전에는 죄수의 수금문제와 정기적으로 수금인을 기록, 보고하는 獄案 修啓 조항이 신설되었다. 또한 각종 사회범죄에 대한 세부조목이 신설, 보완되어 규제와 처벌을 올바르게 하려는 국가의 대민통제원칙을 확인할 수 있었다.

## 2.2 獄案修啓제도의 정비와 「秋曹決獄錄」의 기록

국가는 사회체제의 유지와 국가질서의 안녕을 도모하기 위해 백성들의 일탈적인 행위에 대한 규제를 실시하였다. 일반적이고 통일적인 법제를 만드는데 심혈을 기울였으며, 이를 통해 사회생활에서 발생하는 危害 행위에 대해 형벌을 부과하였다. 앞 절에서 살펴 본 조선후기 형법의 정비는 각종 범죄 행위에 대한 일련의 제도적 해결책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국가는 형사 소송 사건을 판결하는 기한을 법전에 규정해 놓을 정도로 決獄에 대해서도 신중하였다.<sup>18)</sup> 형사사건이 사람의 인명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이었으므로 죄상을 기록한 옥안은 사건 심리 과정의 주요한 자료였다. 특히 옥안 가운데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살육의 경우 옥안에 기록된 문자 하나에도 사람의 생사가 좌우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였다. 정조는 ‘자신이 살피고 삼가는 것은 살육만한 것이 없다’<sup>19)</sup>고 하며, 국가의 문자 가운데 가장 어려운 것이 ‘살육안’이라고 말하였다. 그는 ‘옥안의 검토’를 ‘經書를 보는 것’에 비유하며, 전혀 의문이 없는 곳일 지라도 재차 의문을 가지며 살펴보도록 하였다.<sup>20)</sup> 이는 사망원인과 관련 증거가 모두 갖추어진 옥안일지라도 세밀히 분석하여 살릴 만한 단서를 찾아 죄인에게 원통함이 없게 하려는 이유 때문이었다.

옥안의 중요성은 백성의 목숨을 중시하고 형육을 신중히 하기 위한 방편으로

18) 「經國大典」卷5, 刑典 決獄日限條. 「경국대전」에는 사형 죄인은 30일, 도형과 유형은 20일, 태형과 장형은 10일을 기한으로 하는 결옥일한이 규정되었다. 이 일한은 사건에 관한 문건이 모두 제출되고, 증인이 모두 도착한 날로부터 계산하였다.

19) 「弘齋全書」卷167, 日得錄7 政事2 直閣臣李晩秀己酉錄.

20) 「弘齋全書」卷166, 日得錄6 政事1 直提學臣鄭志儉甲辰錄.

정조 재위 내내 강조되었다. 정조는 즉위 후 전국에 걸친 死罪 심리 과정에서 옥안의 작성방식이 정해진 원칙이 없자, 통일된 옥안의 정식을 만들도록 명하였다. 당시 전국에서 올라오는 옥안은 각 도 마다 기록체제가 달랐다. 죄명을 쓰지 않은 옥안이 있는 반면, 절린 및 保授를 밝히지 않은 것도 있었다. 또한 초검, 복검의 내용이 너무 동떨어지거나 범행이유도 어떤 지역은 구체적이고 분명한 반면, 어떤 지역은 그렇지 못하는 등 지역차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는 죄인의 계본의 경우 죄명, 검장의 기록, 응문각인의 초사의 순으로 옥안의 기록 형식을 서울과 지방이 동일하도록 통일하였다.<sup>21)</sup>

옥안의 정식화와 함께 이를 왕에게 보고하는 修啓 방식도 정비되었다. 영조대까지 詞訟을 담당한 관사의 決等公事는 10일 마다 기록해서 왕에게 보고(錄啓)하였는데, 특별한 사정이나 사고가 있으면 다음 15일 이내에 거행하는 것이 제도화되었다. 決訟하는 날짜는 월마다 갖추어 형조에 이문하여 처결하였는데, 京外官이 옥송을 빨리 처결하지 않고 죄수를 오래 가두어 두고 결송을 지체한 경우는 조사하여 파직하였다.<sup>22)</sup>

이와 같이 수감되어 있는 죄수의 경중을 막론하고 죄의 내용을 기록하여 왕에게 보고하게 한 것은 옥송을 신중히 다루고자하였기 때문이다. 국가에서는 10일 마다 죄인을 녹계하는 제도를 법전에 마련하였지만, 담당 관리들의 죄수 녹계 실태는 미봉적이었다. 녹계할 시기에만 임시방편적으로 보고했기 때문에, 방면하지 않은 죄인을 거짓으로 방면한 것처럼 보고하는 등 각 사에 수감되어있는 죄수

21) 『秋官志』 2編, 詳覆部 啓覆 獄案修啓. 관찰사의 심리장계에 대한 규칙은 각 도마다 옥안의 규칙이 달랐기 때문에 이의 간결화를 위해 1779년(정조 3) 만들어졌다. 『審理狀啓規式』의 내용을 보면 먼저, 범인의 성명, 거주지, 범행방법, 사망일자, 囚禁일자, 형문의 횟수를 기록하며, 屍親의 고소장 또는 面任·里任의 자필 보고서인 手本을 적었다. 다음 초검에서 나온 상처와 實因, 검험 날짜, 屍親·正犯·干犯·干連 등의 초사를 기록하며, 초검관의 성명과 균현명을 표시하고 검험에 대한 검관의 의견서인 結辭를 적었다. 그러면 관찰사가 성명을 표시하고, 결사에 대한 관찰사의 판결인 題辭를 적었다. 이후 복검 과정도 초검 과정과 동일하게 기록하였다. 만약 시친이나 정범의 家屬들이 상언이나 격쟁으로 인해 조사하게 되었을 경우 그 原情 및 형조의 回啓, 本道 검험관의 의견서인 跋辭, 형조의 覆啓를 연, 월일과 함께 기록하였다.

22) 『續大典』 卷5, 刑典 決獄日限條.

들의 실태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1778년(정조 2)에는 法禁을 관장하는 관리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옥안의 복계를 지체한 형조참의 이진규를 삭직하고, 낭청 유환덕을 파직하는 등 담당 관원들을 징계하기도 하였다.<sup>23)</sup>

옥안을 수계하는 제도는 이미 중국에서는 당나라 때부터 시작되어 송나라 때 완비된 것이었다. 이때의 제도는 모두 5일에 한 번씩 죄수를 기록하는 것으로, 10일 단위로 기록하는 조선의 것과는 시일 면에서 차이가 있었다. 이에 정조는 중국의 예에 따라 옥안수계제도를 종래 10일마다 죄수를 기록, 보고했던 방식에서 5일마다 보고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sup>24)</sup> 이러한 조치는 10일 사이에 억울하게 죄를 받은 죄수가 있을 경우 스스로 그 억울함을 왕에게 전달시킬 방법이 없었으므로 사건의 신속한 파악을 위한 국가의 흠휰적인 측면과 함께 당시 미봉적인 죄수 보고의 관행을 혁파하기 위해서였다. 따라서 「五日錄啓」의 준례에 의거하여 형방의 좌랑은 5일마다 전옥서에 갇혀있는 죄수를 정리하여 그 죄목을 갖춰 적은 후 승정원에 입계하였다.<sup>25)</sup>

이후 국가는 녹계된 죄수의 옥안을 연말에 모두 합쳐서 서책으로 만드는 작업을 정식화하였다.<sup>26)</sup>

刑獄을 삼가 신중히 하는 것은 제왕으로서의 훌륭한 일인데, 나는 사리를 밝혀 다스리는 것이 두루 미치지 못하여 매번 한 가지 옥안을 판결할 때마다 번번이 顛倒되는 염려가 없지 않았다. 올해의 결옥 문안을 조목조목 나열하여 계문하도록 하였는데, 관직의 이동과 제수, 財用의 출입, 講製의 抄拔은 모두 案簿가 있어 그에 해당하는 달이 되면 낭관이 와서 御覽案을 수정할 것을 청한다. 더구나 형옥을 결단하는 것은 죽느냐 사느냐에 관계되는 것으로, 이치상 충분히 살펴 신중히 해야 할 것인데, 어찌 이미 결정된 것이라 하여 다시는 더 뜻을 기울이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후로 의금부와 형조는 결단한 옥안을 큰일이나 작은 일 할 것 없이 긴요한 사항을 초록해서 월말이 되거든 기록하여 보고하고, 啓下되기를 기다려 매년 마지막 달에 모두 한 책에다 베껴 쓰되,

23) 『正祖實錄』卷6, 正祖 2年 9月 癸丑.

24) 『正祖實錄』卷6, 正祖 2年 9月 甲寅.

25) 『秋官志』1編, 雜儀 錄啓式.

26) 『正祖實錄』卷16, 正祖 7年 7月 辛丑.

한결같이 이조와 병조의 大政考, 호조의 財用簿, 예조의 講製案의 식례에 따라 하는 것을 정식으로 삼도록 하라.<sup>27)</sup>

당시 옥사를 관장하는 것 가운데 가장 어려운 것은 사건의 재심인 讞獄과 판결인 折獄이었다.<sup>28)</sup> 언옥을 시작할 때 여러 사건과 비교해보고 조율하는 것은 절옥한 뒤에 조금의 실수도 없게 하기 위해서였다. 이는 그만큼 옥사의 심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1783년(정조 7)에 이르기까지 형조에는 사형죄인의 심리, 판결이 인명과 관계된 중대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기록한 案簿가 없었다. 같은 6조인 이조와 병조는 관직의 이동 및 제수에 관한 ‘大政考’가 있었으며, 호조에서는 財用의 출입을 기록하는 ‘財用簿’가 있었다. 예조 또한 講書와 製述의 초출을 기록한 ‘講製案’이 있었다. 따라서 정조는 형옥 결단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의금부와 형조에서 판결한 옥안의 대소를 가리지 말고 ‘대정고’, ‘재용부’, ‘강제안’의 식례에 따라 그 요점을 초록하여 매월 말에 녹계하고 매년 말에 책으로 만들도록 명령하였다. 형조의 ‘월말녹계’는 ‘御覽冊子’의 예처럼 죄수의 경중에 따라 분류하여 기록해야 하나 문서를 수정할 때 불편한 점이 많았기 때문에 날짜의 선후에 따라 차례로 요점만 기록하여 보고하였다. 그리고 매 계절의 끝 달인 3, 6, 9, 12월에 가서는 죄수의 경중에 따라 분류하여 자세한 전말을 적어 ‘어람책자’에 기재하였다.<sup>29)</sup>

이처럼 형조 및 의금부의 결옥안 성책 작업은 1783년(정조 7)에 시작되었다. 하지만 정조는 성책 범위를 자신이 즉위한 해의 결옥안부터 시작하도록 지시하였다.

다음과 같이 전교하셨다. 금년 봄, 여름 6개월 동안에 판결한 옥안은 시간은 이미 지났으나, 이를 책으로 만들어 기입할 것과 작년(1782)부터 거슬러 병신(1776)년까지도 모두 이 범례에 따라 기입할 것을 형조 및 의금부에 분부하라. 당상은 직접 복검을 처리하고 낭관은 연도를 나누어 초록, 편집하도록 함께 분부하라.<sup>30)</sup>

27) 『弘齋全書』卷32, 教3 禁府刑曹修啓決獄案教.

28) 『正祖實錄』卷6, 正祖 2年 11月 戊子.

29) 『秋官志』2編, 詳覆部 啓覆 獄案修啓.

정조는 봄, 여름 6개월간의 결옥안 성책을 지시하는 한편, 이전 시기인 1776년(정조 즉위년) 이후의 옥안도 모두 동일한 범례로 기록할 것을 형조 및 의금부에 명령하였다. 성책할 결옥안의 시기가 정조 즉위년부터라는 점, 매월마다 기록한 녹계라는 점, 형조에서 초록, 편집했다는 점 등을 통해 보면 1783년(정조 7) 형조에서 시행한 결옥안 성책 작업의 결과물은 「추조결옥록」으로 판단된다.

정조 이전 시기만해도 옥사 심리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의금부와 형조에는 이를 체계적으로 기록한 ‘案簿’가 없었다. 이에 국가는 형옥 결단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의금부와 형조의 옥안을 기록하는 작업을 시행하였다. 옥안의 작성방식을 통일하여 문서의 체계를 일원화시켰으며, 계본의 형식도 동일하였다. 또한 옥안수계 시기를 제도화 하였고, 녹계 옥안의 성책 작업을 진행하였다. 따라서 「추조결옥록」은 이러한 옥안수계제도의 정비과정에서 나타난 결정체로, 책의 편찬 작업은 1783년(정조 7)에 시작되었으나 수록 대상 시기는 정조 즉위년부터의 옥안이었으며, 형조의 낭관이 제도의 옥안을 연도별로 나누어 초록, 편집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 3. 「秋曹決獄錄」의 서술방식과 자료적 가치

#### 3.1 「秋曹決獄錄」의 서술방식 및 자료수록 실태

현재 규장각에 소장되고 있는 문서번호 <규15148>의 「추조결옥록」은 총 43책으로 이루어져 있다. 「추조결옥록」을 수록 대상년도와 原자료의 卷次를 비교해서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30) 「秋官志」 2編, 詳覆部 啓覆 獄案修啓.

<표 1> 「추조결옥록」의 권수 및 수록 시기

책수	권수	시기	책수	권수	시기
1	47	1822	7~15	76~84	1851~1859
2	55	1830	16~21	86~91	1861~1866
3	59	1834	22~25	93~96	1868~1871
4	68	1843	26~28	98~100	1873~1875
5	70	1845	29~37	102~110	1877~1885
6	73	1848	38~43	113~118	1888~1893

<표 1>에 따르면 규장각 소장 「추조결옥록」은 권47부터 권118까지 남아있으며, 그 가운데 권48~54, 권56~58, 권60~67 등 28권이 결락되어 43권 43책으로 구성되었다. 편찬 시기는 1822년(순조 22)부터 1893년(고종 30)으로, 이 시기 형조에서 처결한 옥안 및 형사사건 관련 각 관사의 계본이 수록되었다. 수록대상 년도와 원 책의 권수를 비교해 보면, 1책인 권47이 1822년, 2책인 권55가 1830년, 3책인 권59가 1834년, 7책인 권76이 1851년, 8책인 권77이 1852년 등으로 1년마다 옥안을 묶어 1권씩 만든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현재 남아있는 권수가 47권에서 118권인 것을 감안하면, 1권은 1776년(정조 즉위년)에 起卷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현재 남아있는 것은 43책뿐이지만, 표지의 卷次로 보아 1776년에 기권하여 1893년까지 총 118권 118책이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추조결옥록」의 경우 권47부터 내용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책의 편찬 동기와 경과, 초기 편찬자, 범례 등의 편찬방식을 파악하기는 어렵다. 다만 앞 장에서 보았듯이 1783년(정조 7) 옥안수계제도의 정비과정에서 비로소 「추조결옥록」의 편찬 작업이 시작되었으며, 형조의 낭관이 연도별로 옥안을 묶어 초록, 편집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면 현존하는 「추조결옥록」의 1책인 권47(1822년(순조 22))을 통해 책의 서술방식을 살펴보도록 하자. <표 2>에 따르면 「추조결옥록」은 먼저, 권별로 연도를 표시하고 월별로 기술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매 월마다 형조 및 각 관사의 초기 및 계목, 형조의 심리 옥안, 각종 형사사건을 시기적 순서에 따라 기록하였으며, 그 해 내린 형사사건에 대한 왕의 판부 및 전교도 수록하였다.

조선 후기 獄案修啓의 실태와 「秋曹決獄錄」의 편찬

<표 2> 「추조결옥록」 권47(순조 22년)의 구성과 내용

월별	내용	월별	내용
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京畿監司 韓競履 啓本 錄啓罪人 1名</li> <li>· 承政院 啓辭</li> </ul>	7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김재원 등을 의금부에서 국문하여 처리하라는 전교</li> <li>· 도산현 전패작범죄인(인철이)에 대한 추고</li> <li>· 형배죄인 급가에 관한 형조 초기</li> <li>· 효회전 망제찬인 이원보 나문에 관한 의금부 계사</li> </ul>
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秋曹 猥濫擊錚人의 격쟁원정</li> <li>· 형조의 초기</li> <li>· 京畿監司 韓競履 啓本</li> <li>· 격쟁 원정에 대한 형조의 계목 · 전교</li> </ul>	8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배죄인의 기간 만료에 대한 황해도 감사의 계본</li> <li>· 창의문 관물 유실에 대한 병조의 계</li> <li>· 범야죄인 이송에 대한 형조의 초기</li> </ul>
3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교 · 죄인 서신규에 대한 형조의 초기</li> <li>· 관하한 原案에 대한 형조의 계목</li> <li>· 범야죄인 이송에 대한 형조의 초기</li> <li>· 完任, 今伊의 정배에 대한 형조의 초기</li> <li>· 반인 이동원의 죄상에 대한 형조의 초기</li> </ul>	9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액예, 원예의 싸움에 대한 전교</li> <li>· 영녕전 주시관의 처벌에 관한 승정원의 계사</li> <li>· 도배죄인의 기간 만료에 대한 전라감사의 계본</li> <li>· 도배죄인의 기간 만료에 대한 황해감사의 계본</li> <li>· 도배죄인의 기간 만료에 대한 강원감사의 계본</li> </ul>
윤 3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부 김대홍의 모장에 대한 형조의 초기</li> <li>· 선회궁 주방 기물 투절죄인에 대한 좌우 포도청의 계사</li> </ul>	10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별감 서명준 등의 치죄를 요하는 사말의 수본</li> <li>· 대빈궁 수복 조종현의 정배에 대한 형조의 초기</li> <li>· 전패작범죄인 송희집에 대한 평안감사의 계</li> <li>· 살육안: 영천 김조술 옥사</li> <li>· 녹계죄인(북청 고성범)에 대한 함경감사의 계본</li> <li>· 도배죄인의 기간 만료에 대한 경상감사의 계본</li> <li>· 천안군 偷符죄인 정치인 옥사</li> <li>· 홍주 고해창 등 산송에 대한 조사</li> <li>· 도배죄인의 기간 만료에 대한 강원감사의 계본</li> <li>· 살육안: 京囚 奴 창손 옥사</li> </ul>
4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장 난입에 대한 형조의 초기</li> <li>· 冒赴죄인 沈寅恭에 대한 형조의 초기</li> <li>· 정배죄인 기한만료에 대한 강원감사의 계본</li> <li>· 의금부 계사</li> </ul>	1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京囚 살육안: 김정엽, 奴 순봉, 김홍래 옥사</li> <li>· 살육죄인 김악이의 제조사에 대한 비변사계사</li> <li>· 품처죄인 무산 황명청에 대한 함경감사의 계본</li> <li>· 북부 김진손의 정장에 대한 형조의 초기</li> <li>· 정배죄인의 기한만료에 대한 공청감사 이석규의 계</li> <li>· 회양부 살육죄인 송원철에 대한 비변사 계사</li> <li>· 정배죄인의 기한만료에 대한 강원감사의 계</li> <li>· 살육안: 해주 이경옥, 곡산 김상운, 황주 김광표, 京囚 이희익, 함흥 권종각, 京囚 홍수명, 부안 김맹용</li> <li>· 심리죄인(이상홍 외 2인)에 대한 전라감사의 계</li> </ul>
5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성 허해 산송을 관하에 의거하여 조사</li> <li>· 제주목 박원의 옥사에 대한 추고</li> <li>· 창평 윤치방 산송</li> <li>· 전패작범죄인 송희집에 대한 평안감사의 계본</li> <li>· 부여 김수민 산송</li> <li>· 도산현 전패작범죄인에 대한 황해감사의 계본</li> <li>· 경회궁 투절죄인에 대한 포도청의 계사</li> </ul>		

월별	내용	월별	내용
6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교 · 명례궁 월장죄인에 대한 형조의 초기</li> <li>· 기로소 수직관 捉致事에 대한 한성부의 계</li> <li>· 賀穀을 횡령한 무죄배에 대한 형조의 초기</li> <li>· 중부민 흥응주의 朶狀에 대한 형조의 초기</li> <li>· 별감의 무단결직에 대한 사알의 수본</li> </ul>	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형조초기</li> <li>· 도배죄인 기간만료에 대한 황해감사의 계본</li> <li>· 위원군 전패작변죄인 송희집 옥사</li> </ul>

구체적으로는 형조 심리 옥안의 경우 월별로 나누어 편집하였으며, 한 안건이 여러 차례 조사를 받느라 옥사가 지체된 것은 조사를 받은 해당 연도의 권에 수록하였다. 1824년(순조 24)에 발생한 서울 살육죄인 정자근손 옥사의 경우 1830년(순조 30)에도 수록되어 있으며,<sup>31)</sup> 사건판결이 지체되어 1848년(헌종 14)에도 기록되어 있다.<sup>32)</sup> 1831년(순조 31) 이명석 옥사 또한 14년 뒤인 1848년(헌종 14)과 1845년(헌종 15)에 수록되고 있는 것은 그 한 예이다.<sup>33)</sup>

살육안의 서술 방식은 『심리록』이 서울과 사도(四都)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경기, 관동, 호서, 호남, 영남, 해서, 관서, 관북의 순으로 옥안을 기록한 것과 달리,<sup>34)</sup> 『추조결옥록』은 서울과 지방의 차서를 두지 않았다. <표 2>의 11월과 12월에 나타난 살육안의 예에서 보면 서울의 경우는 京囚로 쓰거나 동부, 서부, 남부 등 5부의 명을 직접 기입하였다. 지방은 道名과 군현 명을 함께 기입한 것이 아니라 천안, 홍주, 곡산 등 주, 군현 명만을 기입하여 ‘해주 이경옥 옥사’, ‘곡산 김상운 옥사’ 등 ‘某邑 某獄’의 체제로 범죄인을 기록하였다. 이 때 주군현명은 도명을 기입하진 않았지만, 도별로 구분하여 살육안을 수록하였다. 그리고 그 아래에 사건의 원인(根因), 보고기한, 피살자의 상처 모양과 증상, 사망 원인(實因), 옥사가 성립된 연월을 쓰고 사건의 대강을 기록하였다.

또한 <그림 1>의 강릉 안영현 옥사에서 보듯이 동일한 안건으로 왕의 판부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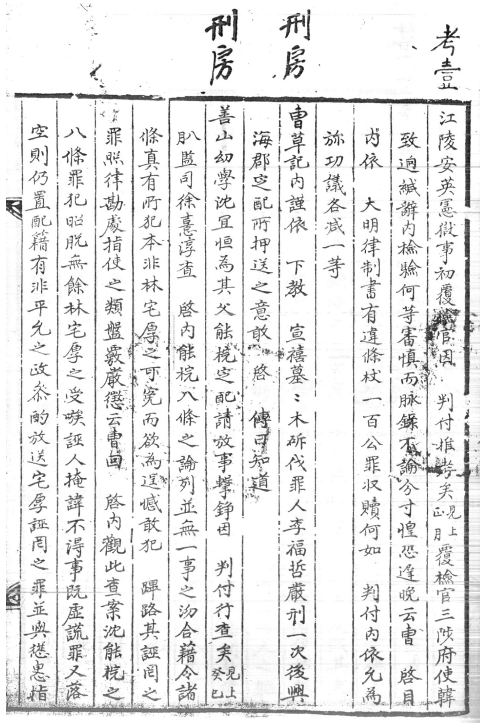
31) 『秋曹決獄錄』 권2, 庚寅(순조 30년) 3월.

32) 『秋曹決獄錄』 권6, 戊申(헌종 14) 11월.

33) 『秋曹決獄錄』 권6, 戊申(헌종 14) 9월; 『秋曹決獄錄』 권7, 辛亥(헌종 15) 3월.

34) 『審理錄』 권1, 絃例.

이전 시기와 같으면 중첩해서 쓰지 않았다. 판결문은 첫 번째 錄案에 쓰고, 그 뒤에 보이는 것은 “지난 某月에 보인다(見上某月)”의 형식으로 협주로 썼다.



<그림 1> 「秋曹決獄錄」 甲午 正月

관찰사와 형조의 계사는 긴요한 내용을 간추려 정리해서 별도의 행으로 기록하였다. 수록된 문서의 바로 위에는 사건을 맡은 형조의 屬房이 ‘詳壹’, ‘考貳’, ‘禁壹’, ‘隸貳’, ‘刑房’ 등으로 적혀있거나 찍혀 있다. 이는 4사 9방 체제인 형조의 各房 分掌을 보여주는 것으로, 서울과 지방의 사죄 심리는 상복사가, 율령의 관찰 업무는 고율사가 담당하였으며, 형옥과 금령은 장금사, 전국의 노비는 장례사가 담당하였다. 이들 4사에는 각기 1방, 2방 두 개의 방을 두어 업무를 다시 분장하였

으며, 4사와는 별도로 형방을 만들어 금란과 죄수를 관리하게 하였다. 형조는 위의 9방을 중심으로 관할 관아와 8도 군현을 분담하여 8도의 狀牒과 군현의 공문에 대한 論斷과 覆奏를 관할하였다. 상1방은 전체적으로 지방의 사형을 심리하는 임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지역으로는 서울 북부, 남부, 함경도를 맡고 있다. 고2방은 율령을 관장하며, 비변사, 시강원, 평시서 등의 관사와 서울 중부지역을 담당하고 있다.<sup>35)</sup>

서울의 경우 북부, 남부는 상1방이, 중부는 고2방이, 동부는 금1방이, 서부는 금2방이 담당하였다. 따라서 북부, 남부에서 발생한 옥사일 경우 옥안 위에 ‘詳壹’이라고 직접 적거나 도장으로 찍혀 있으며, 의금부나 훈련도감의 기사에는 ‘隸壹’이라고 적혀있다. <그림 1> 또한 형방이 금란을 담당하였으므로 선희묘 묘목 작별죄인에 대한 형조의 초기 위에 ‘형방’이라고 적혀 있으며, 고을사는 율령을 담당하면서 지역적으로 강릉에서 보내온 공문을 검토하여 상주하였으므로 강릉 죄인 안영현 옥사 위에 ‘考壹’이라고 적혀 있다. 옥안의 사건을 맡은 각방분장의 구분은 제38책(1888년) 이후부터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다음으로 『추조결옥록』의 자료수록 실태를 살펴보자. 『추조결옥록』의 자료는 문서형태와 내용별로 크게 심리안, 상언·격쟁안, 草記書啓類, 徒流案, 전교로 나눌 수 있다. 심리안은 전국에서 발생한 살인사건 및 절도, 위조 죄인에 대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 및 법률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형조가 조사한 행위를 기록한 문서이다. 상언·격쟁안은 자신의 가족이 억울하게 살인사건에 연루되었거나 산송 등이 발생했을 때 이에 대한 자신의 사연을 국왕에게 직접 호소한 문서이다. 초기 서계류는 왕에게 올리는 上奏文의 하나로 각 관사에서 형사사건에 관련된 사항을 사실만 간략히 적어 임금에게 올리던 문서이다. 본 논문에서는 초기서계류를 형조, 각 사 및 관원, 제도 관찰사가 올린 계본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특히 관찰사가 올린 계본에는 각 도에서 발생한 살육죄인을 보고하는 녹색 기록이 나타나고 있어 이를 별도로 구분하여 표로 작성하였다(표 3 참조).

자료의 시기적 구성을 살펴보면 <표 3>에서 보듯이 『추조결옥록』은 순조대의

35) 『秋官志』, 1編, 官制 刑曹.

경우는 1822년(순조 22), 1830년(순조 30), 1834년(순조 34) 3년의 결옥안이, 헌종대는 1843년(헌종 9)과 1845년(헌종 11)만이 남아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추조결옥록」을 통해 순조, 헌종대의 전반적인 형사기록을 살피기에는 자료적 한계가 있다. 이에 반해 철종대에는 1850년(철종 1)과 1851년(철종 2)을 제외하고 1852년(철종 3)부터 1863년(철종 14)까지 12년간 형조에서 결옥한 사건들이 서술되었다. 고종대의 경우는 1867년(고종 4), 1872년(고종 9), 1876년(고종 13), 1886년(고종 23), 1887년(고종 24)의 5년간을 제외하고는 형조에서 결옥한 모든 사건들이 수록되었다. 그러므로 「추조결옥록」은 철종대와 고종대의 범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자료의 시계열성을 찾아볼 수 있지만, 순조대와 헌종대의 경우 기록이 소략하여 이 두 시기의 범죄양상을 검토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내용별 자료 구성을 보면, 「추조결옥록」에는 총 6,199건의 각종 형사사건 관련 문서가 기록되었다. 그 가운데 가장 많이 수록되어 있는 것은 1,547건의 사죄관련 심리 옥안이다. 특히 해당 군현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에 대한 관찰사의 품처 및 녹계죄인에 대한 계본이 1,062건으로 두 문서를 합하면 옥안 관련 문서가 총 2,609건으로, 전체 내용의 약 42.1%를 차지하였다. 형조의 경우 43년간 평균 36건의 옥안을 심리하였던 것이다. 1852년(철종 3), 1853년(철종 4) 두 해에 276건의 사죄를 심리하였으며, 1856년(철종 7), 1858년(철종 9)에는 각각 219건, 201건을 심리하였다. 반면, 1863년(철종 14)과 1873년(고종 10)은 형조의 심리 옥안이 0건이며, 1877년(고종 14) 이후에는 심리옥안이 평균 1건으로 급감하였다. 고종대로 올수록 형조 심리 옥안의 기록이 적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고종대 심리 옥안의 급감을 실제 사건 발생의 급감으로 생각할 수는 없다. 그 이유는 고종대 각 도 관찰사의 살옥죄인 녹계안으로 1874년(고종 11) 138건, 1883년(고종 20) 133건, 1892년(고종 29) 162건 등이 보고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고종대 녹계안의 시기이다. 1874년, 1883년, 1892년에 각각 130건 이상의 살인사건이 해당 연도에 발생했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각도 관찰사의 녹계가 특정 시기에 발생한 것은 옥사가 지체되는 양상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표 3> 「추조결옥록」의 시기별 자료 구성

시기	審理案	擊錚案	草記·書啓類				諸道 放未放回啓	傳教	합계
			刑曹	각도 관찰사		各司·官員			
				錄啓					
1822	20	33	19	8	12	14	0	5	111
1830	9	76	14	0	8	20	9	5	141
1834	8	26	22	3	18	22	7	9	115
1843	14	20	26	3	1	23	8	1	96
1845	36	23	18	30	2	12	7	1	129
1848	45	40	34	34	1	18	8	5	185
1851	16	53	26	7	1	27	21	10	161
1852	191	33	49	97	0	18	15	11	414
1853	185	22	47	22	2	26	8	6	318
1854	97	32	28	23	15	29	14	1	239
1855	28	40	45	21	14	20	7	7	182
1856	219	15	28	25	9	17	9	9	331
1857	11	22	33	10	22	32	7	6	143
1858	201	30	20	44	13	22	28	12	370
1859	31	36	25	61		23	7	1	184
1861	30	25	50	45	18	26	7	18	219
1862	14	12	33	8	11	45	17	3	143
1863	0	3	22		7	15	13	1	61
1864	114	19	42	59	2	21	16	12	285
1865	8	12	35	2	7	20	0	6	90
1866	6	9	26	9	1	14	9	5	79
1868	3	11	31	3	0	27	7	0	82
1869	3	4	27	15	2	21	8	3	83
1870	74	5	26	63	1	12	7	6	194
1871	1	7	25	2	0	5	7	4	51
1873	0	0	16	16	1	14	7	13	67
1874	163	0	32	138	1	12	20	5	371
1875	2	3	39	0	2	15	7	13	81
1877	0	0	27	1	1	21	8	4	62
1878	5	0	43	6	0	16	9	8	87
1879	0	0	34	0	0	16	14	8	72
1880	0	1	27	1	1	17	0	7	54

조선 후기 獄案修啓의 실태와 「秋曹決獄錄」의 편찬

시기	審理案	擊錚案	草記·書啓類			各司·官員	諸道 放未放回啓	傳教	합계
			刑曹	각도 관찰사					
				錄啓					
1881	0	0	63	1	0	8	7	11	90
1882	0	0	29	0	0	20	36	7	92
1883	6	0	47	133	0	11	7	4	208
1884	3	0	48	2	1	17	0	1	72
1885	0	0	45	0	0	15	6	6	72
1888	0	0	47	1	0	10	8	4	70
1889	4	0	31	0	0	16	0	2	53
1890	0	0	28	7	0	11	7	4	57
1891	0	0	31	0	0	24	0	7	62
1892	0	0	42	162	0	16	2	1	223
1893	0	0	36	52	3	10	1	4	106
합계	1,547	612	1,380	1,062	174	788	384	252	6,199

한편, 각도 관찰사에 의해 녹색된 죄인의 경우 다시 형조의 복계 과정을 거치는 데, 1883년 복계된 133건의 옥안에 대한 심리기록이 이후의 시기에 나타나고 있지 않다. 이는 1892년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고종대의 경우 다른 시기와 달리 심리옥안의 기록이 미흡했음과 함께 각 도 관찰사 또한 살육안을 녹색하지 않아 옥사가 지체되는 양상을 엿볼 수 있다. 고종대의 경우 형조의 심리안이 25년간 392건으로 평균 15.7건이 기록된 것에 반해, 철종대 12년간 1,023건이 기록된 것은 이러한 실태를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고종대 상언 및 격쟁의 원정에 대한 형조의 복계안 또한 저조한 기록율을 보였다. 「추조결옥록」에 기록된 상언·격쟁안의 경우 산송이나 입후 등의 내용 외에 90%이상을 차지한 것은 살육죄인의 원역을 호소하는 격쟁이다. 고종대 「추조결옥록」에는 심리 옥안과 마찬가지로 격쟁 원정이 1873년 이후에는 거의 기록되지 않았다. 초기 서계류인 형조 및 각 관사의 계목과 전국의 방미방회 계 문서가 시기적인 특성 없이 일정하게 기록된 것에 반해, 심리안, 격쟁안, 살육죄인의 녹색안 등의 기록이 상대적으로 적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추조

결옥록」은 고종대에 이르러 심리안, 격쟁안의 기록이 이전시기와 달리 저조한 시기적 특성을 드러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3.2 「秋曹決獄錄」의 자료 유형과 내용

앞서 언급했듯이 「추조결옥록」은 크게 형조의 초기 및 계목, 각 사의 계목 및 수본, 심리 옥안, 격쟁 원정, 유배 및 살옥죄인에 대한 관찰사의 계본, 전국의 방·미방수계성책, 왕의 전교 등으로 이루어졌다. 본 절에서는 「추조결옥록」 형옥류의 유형과 그 내용을 살펴 이들이 갖는 자료적 특징과 가치가 무엇인지 살펴보기로 한다.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던 심리 옥안에 기재된 내용별 자료 유형을 살펴보면 크게 살옥류와 비살옥류로 나눌 수 있다. 살옥류에는 살인·강도, 폭행치사, 과실치사, 威逼致死 등의 범죄옥안이, 비살옥류에는 국가의 중죄인 모반, 殿牌作變, 掛書 등 정치범죄와 절도, 僞造, 放火·失火, 掘冢 등의 사회경제 범죄가 수록되었다. 이 외에도 「추조결옥록」에는 현임 관리들의 직무소홀로 인한 국가의 처벌, 관리의 贓罪, 하층민이나 관속의 毆打·作拏, 科場作拏, 禁酒, 禁松, 禁屠, 犯夜 등의 비사형범죄도 수록되었다.

다음의 사료는 강릉 살옥죄인 안영현에 대한 「추조결옥록」의 기록이다. 형조의 심리를 받은 강릉 죄수 안영현에 대한 「추조결옥록」의 기록은 1834년(순조 34) 정월과 9월에 나타난다.

<자료 1> 江原監司 趙容和의 啓本 錄啓罪人 1名. 江陵 安英憲이 崔有連을 무릎으로 찡어 8일 만에 치사하였다. 實因은 무릎으로 찡어서이다. ... 사건의 개요는 술에 취해서 욕하고 싸웠으며 ... 저쪽은 술에 취하고 이쪽은 화가나 좌우로 구르며 뒤집힐 때 최유연의 무릎이 진실로 안영현의 몸에 닿지 않은 것이 없었으며, 英憲의 무릎 또한 유연의 몸에 닿지 않은 것이 없었다. ... 刑曹의 회계 안에 ... 證驗이 相符하고 實因이 이미 已斷하였고 逃躲한 正犯 安英憲을 스스로 겁을 먹은 흔적으로 드러났으니(正犯 安英憲을) 전례에 의거해서 신문하고 추고하여 기필코 자복을 받아야합니다. ... 36)

<자료 2> 9월 강릉 양인 안영희의 격쟁. 지난 신묘년 봄 형 안영현은 호적색으로 짐을 치는 자를 불러, 상경할 시 행로의 길흉을 물을때 최유연이 문득 술에 취해 방에 돌입하였다. 그리하여 저희 형이 술주정이 싫어서 점치는 것이다 끝나면 오라고 하였다. 그러자 유연이 먼저 공손하지 않은 말을 하며 형의 衣帶를 잡아 형이 그대로 유연의 손에 따라 문지방을 넘어 대청마루에 넘어져 서로 구르자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만류하고 각자 귀가하였다. 다음날 저희 형이 일 때문에 백여리가 되는 곳으로 나갔다가 돌아오자 유연이 죽어 그의 부인이 관에 고했다는 말을 전해 듣고 즉시 자수하였습니다. 따라서 검안에 이른바 도망갔다는 말은 白地의 冤抑이며, 또 유연의 죽음은 저희 형과 서로 싸운 후 8일이 지나서입니다. 유연은 본래 胸傍에 질병이 있어 스스로 고통이 심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관비 순애의 공초가 극히 명확합니다. 유연의 집은 染病의 기운이 있어 다른 사람이 서로 왕래하지 않으며 거린 주철득의 공초에도 매우 흰히 드러납니다. … 형조의 회계에, “도계에 過誤의 의견이 있으니 다시 도신으로 하여금 자세히 조사한 후에 품처하는 것이 어떠합니까” 하자 판부하기를, “의거한대로 하라”하였다.<sup>37)</sup>

조선후기 살인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국가는 檢驗, 會推, 錄啓(完決), 同推, 三覆의 5단계 절차를 거쳐 범죄인을 처벌하였다. 한성부를 비롯하여 각 군현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하면 초검과 복검의 검험을 실시하는데, 한성부의 경우 사건이 발생한 部의 部官이, 지방에서는 사망자가 발생한 군현의 관할 수령이 검험관이 되었다.<sup>38)</sup> 검험이 끝나고 복검장이 형조에 도착하면 형조의 세 당상관이 해당 낭관 및 두 검시관과 함께 회동하여 죄인을 신문하였는데, 회추라 하였다. 지방에서는 留守 또는 관찰사의 지시에 따라 두 검험관이 시행하였다. 형조는 회추를 통해 옥사의 내용에 문제점이 없으면 즉시 왕에게 보고하였으며, 의심스러운 단서가 있으면 다시 조사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한성부에서는 완결이라 하였으며,

36) 『秋曹決獄錄』 甲午(純祖 34年) 正月 江原監司趙容和啓本錄啓罪人一名.

37) 『秋曹決獄錄』 甲午(純祖 34年) 9月 江陵安英憲擊錚原情.

38) 검험관은 시체를 안지해 둔 곳에 도착하여 屍親과 피고인의 진술[招辭]을 받았으며, 정범과 干犯 등 죄인을 포함하여 증인, 干連人, 五家長 등 應問各人들에게, 폭행이유, 원한의 유무, 살아 있을 때의 흉터, 범행에 사용된 무기의 크기와 습득여부 등 신문할 조목을 발송하여 첫번째 조사를 받았다. 이것이 끝나면 검험관은 피해자의 시체를 검사하는 檢屍를 실시하여 피해자의 사망원인인 實因을 장부에 기록하고 契印을 찍었다. 복검은 한성부의 경우 형조의 낭관이, 지방에서는 인근 군현의 수령이 초검관이 보낸 공문에 의거하여 검험하였으며, 초검과 복검의 실인에 의심스러운 단서가 있을 경우에는 三檢, 四檢을 실시하였다(『審理錄』 卷1, 應行格式 初覆檢式).

지방에서는 녹계라고 하였다. 각도 관찰사는 부임한 지 만 3개월이 되면 도내의 옥안을 모두 열람하여 별도로 사리를 따져, 녹계한 지 오래되고 형이 확정된 옥사이더라도 의심스러운 단서가 발견되면 사유를 갖추어 계문하고 말미에 품의하여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sup>39)</sup>

<자료 1>은 이러한 형사절차 과정 중 하나인 녹계죄인에 대한 관찰사의 보고 사항을 보여주는 것이다. <자료 1>과 같은 유형의 경우 관찰사들은 죄인의 형사처리 절차에 따라 심리죄인, 품처죄인, 녹계죄인이라 기록하고, 보고하는 인원수를 적었다. 강릉 죄수 안영헌은 최유연과 술에 취해 다투다가 그를 무릎으로 찢어 죽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료 1>에서는 안영헌과 최유연이 싸우게 된 정황, 이에 대한 관찰사의 의견, “證驗이 서로 들어맞고 사망원인이 이미 판결되었으며, 도망한 정황 또한 드러나니 정범 안영헌을 전례에 의거해서 신문하고 추고하여 기필코 자복을 받아야 한다”는 형조의 의견이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녹계문서의 경우 죄인의 성명은 큰 黃籤紙에 써서 부치고, 죄인을 심문하는 조목(問目)과 供招는 서울 죄인은 전부 謄書하고 지방은 요지를 적었다. 跋辭의 경우는 서울이나 지방을 불문하고 모두 베껴서 기록하였다. 입계한 문서는 판하되면 해당 방의 승지가 단독 서명한 후 형조에 보고하고, 완결과 녹계 두 문안을 수정해서 책으로 만들었다.<sup>40)</sup>

<자료 2>는 살육죄인의 가족이 올린 상언이나 격쟁 원정에 대한 형조의 복계안이다. 격쟁 원정의 서식은 제일 먼저 격쟁인의 거주지가 제시되어 있으며, 신분 및 직역, 격쟁인의 성명, 격쟁원정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격쟁 원정의 내용 안에는 대체적으로 범죄인과 치사인과의 관계, 치사인의 당시 행적, 치사인의 인적·병적사항, 범죄인과 시친과의 원한 여부, 옥사가 이루어진 과정 등 사건 전후의 정황이 상세하게 서술되었다.<sup>41)</sup>

39) 『審理錄』 卷1, 應行格式 各道錄啓式.

40) 『審理錄』 卷1, 應行格式 各道錄啓式.

41) 『秋官志』 3編, 考律部 定制 擊錚上言. 조선시대의 경우 살인사건 등 중대한 사건에 대한 誤決이 발생하면 父子, 嫡妾, 良賤의 분간 등과 같이 情理에 절박한 일에 대해서 즉각 다른 관사에 제소하는 것을 허용하였다. 그 밖의 것은 판결한 당사관 및 房掌이 교체된 뒤에 다시 제소할 수 있으며, 교체 후 3년이 지난 것은 들어주지 않았다.

<자료 2>의 경우 강릉에 사는 양인 안영희가 형을 위해 격쟁을 하고 있다. 원정에는 옥사가 이루어진 과정의 정황이 상세히 기록되었다. 안영희는 격쟁에서 형 안영현이 살인을 하고 도망을 갔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며, 최유연이 치사한 이유는 형의 구타에 의해서가 아니라 원래 있던 병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관비 순애의 공초와 겨린 주철득의 공초에서도 명확하게 드러난다고 주장하였다. 형조 또한 안영현 옥사의 경우 재론할 여지가 있으니 도신으로 하여금 다시 자세히 조사할 것을 왕에게 건의하고 있다.

<자료 2>처럼 범죄인 가족의 상언이나 격쟁이 제시되어 있는 경우는 국가의 입장에서 범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닌 가해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바라보기 때문에 피해자와 가해자간의 관계나 원한 여부, 당시의 범죄 상황, 사건 후 피해자 가족의 대처 등을 생생하게 살펴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추조결옥록』에는 강릉 안영현 옥사의 예와 같이 살육죄인의 자료유형이 동일한 패턴을 보였다. 모두 형조의 복계안과 이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는 가족의 격쟁원정이 수록되어 있다.

둘째, 전패작변이나 궁궐 및 관물의 절도죄인, 경범죄인의 경우는 의금부나 좌우포도청, 각 관사의 계사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형조의 계목이나 초기의 문서 형식은 먼저 보고하는 사건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기재한 후 그 말미에 “상재하십시오” 또는 “본도로 하여금 다시 조사하도록 한 뒤 상주, 처리함이 어떠합니까,” “형추하여 실정을 밝혀내는 것이 어떠합니까,” “본조에서 법에 따라 심사, 처리하는 것이 어떠합니까” 등의 문투를 각 사건의 처리 내용에 맞게 기록하였다.<sup>42)</sup>

『추조결옥록』소재 초기서계류에는 형조, 의금부, 좌우포도청, 성군관, 승정원, 호조 등의 계사가 위의 문서형식으로 실려 있다. 각 관사 및 형조의 계목에는 각 지방 전패작변죄인에 대한 추고나 과장 난입에 따른 科罪, 무곡 횡령, 월장, 범야 등 각종 비살육 범죄인에 대한 조율 기록과 죄수 관리에 대한 내용들이 대부분이다. 좌우포도청의 계사에서는 주로 각 궁궐의 기물을 훔친 관물 절도죄인에 대한 것이 많으며, 관속들의 폭력행위나 집단구타행위에 대해 이를 감독

42) 『秋官志』1編, 雜儀 啓目式, 草記式.

하는 사알의 수본도 많이 기록되었다.

셋째, 『추조결옥록』에는 敎典 문서와 徒流案이 기록되었다. 조선시대에는 도류, 안치, 충군 등에 처한 죄인의 경우 사면 시기가 되면 석방을 해 주었다. 아래의 자료는 1862년(철종 13) 함경도 유배죄인의 석방(放)여부를 결정하는 형조의 회계이다.

함경감사 이종우의 放未放修啓册子에 따라 형조의 계목에 稟秩中 첩지를 붙인 명천의 이도인 등과 放秩中 무산의 김낙봉 등, 仍秩中 회령의 우정문 등은 삼가 啓下에 의해 모두 放送하였습니다. 종성의 민석은 放字를 써서 내렸으니 일체 방송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관부하기를 의거한대로 윤희한다. 放秩 李道仁 操切殘民 金洛鳳 搶奪人財 禹正文 軍器庫 失火 私奴 命福, 私奴 順得, 李命福 閭里에서 作拏 金首業 逋欠 洪日守 李正學 金辰甲 金順基 高二九 姜萬石 金一億 朴春瑞 私掘하여 관이 드러남 金永達 난언 明禮 士族구타 崔化心 趙儀瑞 陳甸西 백성학대 閔錫 무감구타<sup>43)</sup>

전국 죄수의 석방과 미석방에 관한 계본은 매년 의금부와 형조에서 覆啓한 다음에 비변사에서 회계하는 것이 상례였다. 그러나 정조대에 이르러 석방·미석방에 관한 계본을 비변사에서 회계하는 규정을 혁파하고, 發配하게 될 때에 의금부나 형조 중에 관장하게 되는 아문에 분부하여 관문을 보내게 하는 것을 정식으로 하였다.<sup>44)</sup> 위의 자료에서 보면 함경도 관찰사가 보고한 석방죄인과 미석방죄인의 수계에 의해 형조는 석방논의 대상(稟秩)인 죄인 이도인과 석방대상(放秩) 죄인 김낙봉, 미석방죄인(仍秩) 우정문 등을 모두 방송하였으며, 석방대상으로 왕에게 최종 결정을 받는 종성죄인 민석의 방송여부를 왕에게 묻고 있다. 문서의 말미에는 최종 석방하는 죄인의 성명과 죄명을 기록하였다.

이와 같이 『추조결옥록』에는 전국의 죄인을 放秩과 未放(仍)秩로 구분한 사전 문서가 기록되었는데, 매년 매 계절의 끝 달인 3, 6, 9, 12월에 수록되는 경우가 많았다. 사전문서는 심리안의 경우 지방의 순차가 없었던데 반해 경기, 강원, 충청, 황해, 평안, 전라, 경상, 함경도의 순으로 기록되었다. 석방할 죄인의 성명과

43) 『秋曹決獄錄』 17책, 壬戌(철종 13년) 3월.

44) 『正祖實錄』 卷5, 正祖 2年 閏6月 14日 壬申.

함께 죄상, 형량, 정배지에 대한 내용 등이 서술되었으며, 이를 통해 어떤 류의 죄인이 사면대상이었는가를 확인할 수 있다. 「추조결옥록」의 경우 다른 형옥류와 달리 각 도에 정배된 죄수들 가운데 석방할 자와 석방하지 않을 자에 대한 계본을 판하하는 내용이 기록된 것이 특징이며, 이러한 사전문서의 경우 「추조결옥록」의 기록이 가장 상세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추조결옥록」만이 가지고 있는 자료적 장점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추조결옥록」에는 관직자의 위법행위에서부터 이에 대한 처벌, 민인들의 상언·격쟁, 살옥죄인들에 대한 사건의 내용과 처벌, 정배죄인의 석방과 미석방, 경범죄수 등 당시 범죄인의 현황과 처리과정, 범죄유형 등이 상세히 서술되었다. 따라서 「추조결옥록」의 기록은 19세기 국가에서 파악된 모든 범죄의 형사처리과정을 기록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범죄 양상, 범죄자의 형사절차, 국가의 사면대책 등을 살펴보는 데 가장 통합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라고 할 수 있다.

####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조선후기 법치가 강화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행정 운영 중 옥안 수계제도의 정비와 이에 대한 결과물로서 「추조결옥록」이 편찬되는 과정과 자료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추조결옥록」의 편찬은 조선후기 형률의 강화라는 국가의 사회통제 정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범죄인에 대한 녹계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부각되었다. 조선후기 형옥류의 편찬목적은 심리한 옥안에 대한 왕의 판부를 편집하는데 있었다. 하지만 「추조결옥록」의 경우 단지 판부의 편집에만 그치지 않고 한 사건에 대해 왕의 판부가 나오게 되는 모든 과정에서 수반된 주요 문서의 요점을 함께 기록, 보완함으로써 형사결옥집의 총합체로서의 구실을 하였다.

「추조결옥록」에서 자료적으로 주목할 것은 먼저 심리 옥안이다. 심리 옥안에서는 당시의 범죄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으며, 피해자나 가해자 가족들의 상언·격쟁 원정, 해당 군현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한 각 도 관찰사의 장계, 왕의

판결 등이 상세히 기록되었다. 그 결과 범죄가 발생한 지역, 범죄인 성명, 살인 사건일 경우 피해자의 상태와 사망원인, 사건의 원인,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등 범죄 관련 요소들을 용이하게 살필 수 있었다.

따라서 『추조결옥록』의 심리 옥안 자료를 통해 당시의 사회상과 민의 동태가 어떤 상관관계를 이루고 있는가에 대한 기초적인 검토를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범죄행위를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게 되는 구체적인 인과과정을 통해 조선후기 사회갈등양상을 파악하는데 유용한 자료적 이점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국가의 사회통제와 범죄와의 관계, 국가의 감시와 민의 일탈 등에 대해 보다 심층적인 접근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둘째, 『추조결옥록』에는 형조 및 각 관사의 계사가 전체 자료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다. 형조의 복계양상과 왕의 관부를 통해 당시 형조 및 국가의 법인식에 관한 이론적 탐구가 가능하며, 전통시대 형벌의 목적을 비롯하여 형사재판에 영향을 미치고 구속하는 원리나 윤리와 형벌이 상충하는 문제 등 당시의 형법사상을 살필 수 있다.

셋째, 『추조결옥록』에는 전국 도형 및 유배죄인의 사전문서가 실려 있다. 종래 범죄연구에 있어서 사형죄인에 대해서는 주목을 한 반면, 그 외 범죄인에 대해서는 소홀한 면이 있었다. 『추조결옥록』의 경우 다른 형옥류와 달리 각 도에 정배된 죄수들의 사전문서가 가장 상세히 기록된 것이 특징이며, 이는 『추조결옥록』만이 가지고 있는 자료적 장점이라 할 수 있다. 사전문서의 분석을 통해 19세기 유배범죄인의 실태와 국가의 사면정책의 양상을 살펴볼 수 있다.

이처럼 『추조결옥록』은 형조에서 편찬한 가장 방대한 양의 저술로 형조의 형사절차, 국가의 범죄인 처리과정, 각종 범죄 양상 등을 그대로 보여주는 종합적인 자료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순조 22년부터 고종 30년까지 총 43년간 국가의 형사 업무 처리를 기록하고 있음에도 정조대에서 헌종대까지의 기록의 결락은 큰 자료적 한계를 보인다. 하지만 『심리록』이 정조대 사형죄수의 양상을 보여줄 수 있다면, 『추조결옥록』은 분산되어져 나타났던 형옥류의 기록을 시계열성을 가지고 확인할 수 있어 19세기 행정의 양상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라고 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朝鮮王朝實錄』(國史編纂委員會 영인본. 탐구당, 1984).
- 『經國大典』(규장각자료총서 법전편. 서울대 규장각, 1997).
- 『續大典』(규장각자료총서 법전편. 서울대 규장각, 1997).
- 『審理錄』 1-4 (국역본. 민족문화추진회, 1998-2000).
- 『審理錄』 上篇·下篇(법제자료 31·33집. 법제처, 1968).
- 『秋官志』(법제자료 75-78집. 법제처. 1975), 『弘齋全書』(국역본. 고전번역원).
- 『秋曹決獄錄』(奎 15148). 『受教輯錄』(국역본. 한국역사연구회. 청년사, 2001).
- 『新補受教輯錄』(국역본. 한국역사연구회. 청년사, 2000).
- 權延雄. “『審理錄』의 기초적 검토-正祖代의 死罪判決.” 『이기백선생 고회기념 한국사학논총(하) 조선시대편. 근현대편』. 일조각, 1994.
- 심재우. “18세기 후반 범죄의 통계적 분석 - 『審理錄』을 중심으로 -.” 『法史學研究』 32(2005).
- 沈載祐. 『<審理錄> 연구 - 正祖代 死刑犯罪 처벌과 社會統制의 변화』. 서울대 박사학위논문(2005).
- 연정열. “秋官志에 관한 일연구 - 노비쟁송을 중심으로 -.” 『노동경제논집』 10(1987).
- 홍순민. “조선후기 법전편찬의 추이와 정치운영의 변동.” 『한국문화』 21(1998).

